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시보 공주시 GONGJU CITY

제734호 2020. 8. 20.(목)

【조 례】

제1359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3

【규 칙】

제581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제582호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1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1359호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지역”이란 동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 과세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경우

3. 빈집을 주거 또는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임대료를 주변지역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도 제11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8. 19.)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581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책협력보좌관)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협력보좌관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 정무기능, 예산확보 활동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정책협력보좌관)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둘수 있다. ② 정책협력보좌관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 정무기능, 예산확보 활동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020년도 제11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8. 19.)에서 의결된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20일

공주시 규칙 제582호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항목)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원기준 및 금액) 조례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제2조 관련)

지원대상 사업	지원 항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군창의아이디어 사업중 비수익사업	

[별표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금액(제3조 관련)

지원기준	지원 금액
건축물 연면적 330㎡ 미만	연 500만원 이내
건축물 연면적 330㎡ 이상	연 600만원 이내